

「건축법 시행규칙」

건축법 시행규칙 [제54호, 2013.12.30., 타법개정]	건축법 시행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90호, 2014.4.25., 일부개정]
제2조의4(적용의 완화)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. 1.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 가.·나. (생 략) 다.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: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<u>10분의 1</u>을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. (생 략)	제2조의4(적용의 완화)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1. - - - - - - - - - -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다.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<u>100분의 15</u>를 - - - - - - - - 2. (현행과 같음)